

2019년도 제2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4. 2.(화요일), 11:0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2명 참석
 - 심의위원 : 박성호, 임진모(분과위원장 대행)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2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697건(안건번호 제2019-6191~6571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하되, 포털 블로그 내 영화 포스터 등을 이용한 게시물 6개 안건(제2019-6191호~6196호)은 부결하기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2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2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특별한 이견이 없고, 회의록 공개에 대하여 찬성함
- B 위원 : 마찬가지로 이견이 없고, 회의록 공개에 대하여도 찬성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은 그대로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함

3.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전은 안전번호 제2019-6191호~6571호로 모두 1,697건임
우선 안전번호 제2019-6191호~6196호는 영화 포스터 등을 이용한 게

시물이고, 안전번호 제2019-6197호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에 대한 사안임

마지막으로 안전번호 제2019-6198~6571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단순 불법복제물에 대한 사안임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
에게 안전번호 제2019-6191호~6196호 영화 포스터 등을 이용한 게시
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과 민원 내용을 제시하면서)본 사
안은 일반인이 익명으로 보호원 신고사이트를 통해 신고한 것으로
영화 포스터, 스틸 컷을 이용한 게시물들을 블로그에 제공한 것임
문제가 되는 영화 포스터 등은 포털 사이트 영화 정보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시장에서 별도로 거래되고 있지는 아니함

- B 위원 : 포털 사이트 등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영화 홍보 포스
터를 이용한 게시물은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보거나, 공정이
용 또는 인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나 스틸 컷을 이용한 경우에
도 공정이용 등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 A 위원 : 영화의 한 장면만을 이용한 경우 영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저작권법 제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성원영 전문위원 : 특히 안전번호 제2019-6196호는 연기 학원 소속 강
사의 프로필을 소개하며 해당 강사가 직접 노래 부르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제공하고 있음

- B 위원 : 해당 게시물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만 향후 영화 홍보 차원에서 권리자가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 스틸 컷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세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A 위원 : 영화 홍보 포스터를 그대로 쓴 것은 영화사에서 홍보 목적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권리침해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임
스틸 컷이라 하더라도 영화 속 한 장면만을 사용한 본 안건의 경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안건번호 제2019-6191~6196호는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인용 또는 제35조의3에 따른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부결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6197호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안건번호 제2019-6197호는 대용량 메일서버에 저장된 불법복제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설정 게시물을 올린 사안임

- B 위원 :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댓글에 설정한 이유에 관해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과 해당 사이트를 보여주면서)게시글 작성자 자신이 댓글을 달면서 링크를 설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이트는 게시물 본문에 링크를 설정하는 기능이 없을 가능성이 있음
해당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 제공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
(사이트 이용 안내글을 보여주면서)해당 사이트는 과거 심의에서 몇차례 논의된 적이 있는데, 특이하게 게시물 본문이 아닌 댓글에서 불법복제물이나 링크를 제공하고 있었음

- A 위원 : 해당 음원은 현재 국내 음원 제공 사이트에서 유료로 감상할 수 있으므로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B 위원 :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을 제공하는 링크 게시물이므로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안전번호 제2019-6197호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저작물의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만장일치로 가결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6198~6571호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보여주면서)안건번호 제2019-6198호~6571호 게시물은 웹하드 등을 통해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 B 위원 : 금번 심의에서는 음악 불법복제물이 특히 많이 확인됨
- 성원영 전문위원 : (웹하드에서 다운로드한 압축파일 화면을 제시하면서)음악 불법복제물의 경우 심의 시스템에서 저작물명이 1개만 기재되어 마치 게시물 당 1개의 불법복제물만 제공하는 것으로 보임
그렇지만 실제로는 1개의 게시물 당 수백 개의 음원이 제공되고 있음
- B 위원 : 가수 청하의 '별써 12시' 등 최신곡이 많은 것으로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 '별써 12시'는 다른 분과에서도 많이 보이는 게시물이고, 특히 해당 게시물은 최신 인기 대중가요 100곡을 압축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 A 위원 : 오늘은 특이하게도 가수 구창모가 부른 '희나리' 등 최신곡이 아닌 음악 저작물도 확인됨
- B 위원 : 명백한 불법복제물로서 시정권고 대상으로 판단됨
- A 위원 : 모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6198호~6571호 게시물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를 의결하기로 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6191호~제2019-6196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안전번호 제2019-6197호~제2019-6571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이 제2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2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4. 12.

분과위원장 대행 임진모

위원 박성호